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부록 제1407호 2023. 9. 27.(수)

【조 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3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3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38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 정착 지원 조례) 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39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40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41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3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42호(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3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43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44호(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4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4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54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46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 5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4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6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48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7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549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 ... 74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1457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77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1468호(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8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1469호(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83

회 람							
--------	--	--	--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규정(제3조)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제4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비서류(제5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제6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 지원 및 그 절차와 결과보고(제7조 ~ 제9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36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안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
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
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39세 이하의 청년상인
2. 생애최초 창업상인(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사람으로 과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함)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8)에 해당하는 업종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 9)에 해당하는 업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p>	<p>1. 제안이유</p> <p>○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제1조 ~ 제3조)</p> <p>○ 구청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제4조 및 제5조)</p> <p>○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6조 및 제7조)</p> <p>○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제8조)</p> <p>○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제9조)</p> <p>○ 소상공인생산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제10조)</p> <p>○ 포상 및 시행규칙 규정(제11조 및 제12조)</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37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호·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4.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창업예정자에게는 제8조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의 책무)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구의 소상공인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가 및 인천광역시의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구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담·자문·교육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밀집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
5.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지원
6. 홍보,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등 소상공인의 협업화 및 조직화 지원
7.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지원
8.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소상공인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구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구매 촉진 등)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우수하고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이하 “소상공인생산제품”이라 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생산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소상공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상공인 경영대상을 매년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제3조, 제4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제5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제6조) ○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지원사업에 관한 비밀 준수 의무(제8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38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 복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보호대상자가 가정 및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직업교육 사업
3.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단체 및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법무보호복지사업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1. 제안이유</p> <p>○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p> <p>○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제3조)</p> <p>○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수립(제4조)</p> <p>○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및 대상(제6조, 제7조)</p> <p>○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8조)</p> <p>○ 은둔형 외톨이 자립지원 및 교육(제9조, 제10조)</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39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개발·운영
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상담
2. 학술 조사·연구

3. 교육 및 직업훈련
 4.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5. 자조(自助)모임 지원
 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 3.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경험 또는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 4.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구민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 회의는 제1항과 관련한 심의·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 담당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자립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자립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
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자립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의 자활사업 안내 지침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구성요건을 충족한 유사 기능과 조직의 협의체가 있는 경우 대체 가능 규정이 「2020년 자활사업 안내」부터는 조례를 통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조례 개정 필요 ○ 조례 일부 규정이 「2023년 자활사업 안내」와 불일치하거나 누락되어 조례 정비 필요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회의 주요협의사항 정비(제2조제1항 각 호) ○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항) ○ 부위원장을 호선에서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제3조제2항) ○ 실무자회의 주요협의사항 정비(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40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를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으로,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 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을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 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로, “둔다” 를 “설치하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4.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협의체 구성 기관의 사업 준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7.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8.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당연직”을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
원”이라 한다)은 당연직”으로, “위원장과 복지업무 담당 국장,”을 “자활업
무”로, “각 호에 해당하는”을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직
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제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 를 “한 차례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단서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전임위원의 잔여” 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협의체의” 를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제3호 또는 제4호의” 로, “언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를 “언어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 을 “등 위원으로서의”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의 사유로” 를 “그 밖에 위원으로서”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 를 “총괄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위원장 그” 를 “그” 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협의체 대표자 회의 및 의사)” 를 “(협의체 회의)”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표자회의 “이하 대표자 회의” ” 를 “회의(이하 “회의” ”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표자 회의” 를 “회의”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 를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 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대표자 회의” 를 “회의” 로, “5일전” 을 “5일 전”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긴급을 요하거” 를 “긴급하게 개최해야 하거”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대표자 회의” 를 “회의”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자활기관협의체업무 담당과장” 을 “협의체업무 담당과장” 으로, “자활기관협의체업무 담당이” 를 “협의체업무 담당이”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의” 를 “협의체의” 로,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하 실무자회의” 를 “(이하 “실무자회의” ”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이상 수시로” 를 “이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 5.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운영
- 6.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10조 본문 중 “대표자회의” 를 “회의” 로, “범위 안” 을 “범위”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u>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인천광역시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둔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1조(목적) -- 조례는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 ----- ----- <u>필요</u>----- -----.</p> <p>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이하 “<u>구청장</u>”----- ----- -- <u>인천광역시 연수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며,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한다.</u></p> <p>1. <u>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u></p> <p>2. <u>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u></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 계획수립에 관

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4.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5.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협의체 구성기관의 사업 중 변경 사항에 대한 보고

7.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8.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

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자활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대표자

4. (생략)

5. 기타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체의 위원을 해

1.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

2. 「상공회의소법」 제4조에 따른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자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
-- 경우 해당 -----

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 및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대표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업무 담당이 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1. ~ 5. (생략)
6. 기타 중요사항

-----.

④ ----- 회의-----

----- 5일 전-----

----. ----, 긴급하게 개최해야 하거나-----
-----.

⑤ 회의-----

-----.

제8조(간사 및 회의록) ① -----

----- 협의체-----

-, ----- 협의체-----
-----.

② ----- 협의체의
----- 각호-----

-----.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 실무자회의(“이하 실무
자회의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2. ~ 5. (생략)

<신설>

<신설>

7. 그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
상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실무자회의의 참석대상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기타 자활사업실시기관 등
의 실무자

제10조(수당 등) 대표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별

제9조(협의체 실무자회의 등) ①

--(이하 “실무자회의”라 한다)
-----.

1. ~ 4. (현행 제2호부터 제5호
까지와 같음)

5. 제3조제3항 각 호의 기관 또
는 시설 간 협력체계 구축·운
영

6.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삭제>

② ----- 이
상 -----.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10조(수당 등) 회의-----

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연수
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범위-----

-.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p>	<p>1. 제안이유</p> <p>○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본적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 조례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p> <p>○ 구청장의 책무(제3조)</p> <p>○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제5조)</p> <p>○ 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제6조)</p> <p>○ 여성장애인 참여 확대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제7조, 제8조)</p> <p>○ 여성장애인 고용, 문화예술, 건강,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제9조~제13조)</p> <p>○ 여성장애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제14조)</p> <p>○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 등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제15조~제17조)</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41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을 말한다.
2. “여성장애인학대”란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여성장애인단체”란 여성장애인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하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복지 환경을 마련하고 여성장애인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참여보장과 그 의사반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가 여성장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장애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장애인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장애인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3.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여성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여성장애인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6조(여성장애인 정책 연구 및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장애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장애인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제8조(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장애와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9조(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노동환

경을 만들기 위하여 적절한 편의제공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매년 여성장애인 노동환경 개선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여성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등)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여성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여성장애인 모성권 보호와 보육지원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보육지원 활성화를 위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접근권과 소통을 위한 합리적 편의 제공을 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임신·출산·양육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와 보육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비용과 출산시설, 산후조리시설 지원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산전·산후 조리 및 건강관리를 돕는 도우미 지원
3. 여성장애인의 임신·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돕는 도우미 지원
4. 여성장애인의 자녀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도우미 지원
5. 그 밖에 여성장애인 모성보호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12조(여성장애인 건강권 보호 등)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여성장애인 몸에 맞는 의료 및 보조기구 구입과 편의시설 확보 등 합리적 편의제공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건강권 확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수어 통역, 문자 통역, 음성통역, 점자, 보조기구 등 장애의 유형, 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건강권과 모성권 보호를 위해 생리대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여성장애인 자립생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이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 및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여성장애인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 여성장애인에게

가해진 모든 폭력피해자에 대하여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15조(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추진과정에 여성장애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형의 여성장애인들로 구성된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여성장애인 의견 수렴 및 여성장애인 정책 제안
2. 여성장애인 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
3. 시행 중인 여성장애인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및 참여
4.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구정 참여 확대에 필요한 사항

③ 여성장애인정책네트워크의 모집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여성장애인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단체 및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여성장애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운영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 시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규정 신설 (제7조의2) ○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 규정 신설 (제7조의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42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의3(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 ①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단 등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2만원 이하로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이용료의 감면 기준 (제7조의3제4항 관련)

구 분	감면 비율	대 상
연수구 실 내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료	전액 감면	<p>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어린이와 그 보호자 1명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3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와 그 보호자 1명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세 이상 12세 이하인 어린이와 그 보호자 1명 4. 구청장이 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감면	2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7조의2(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7조의3(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 ①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립한 공단 등에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구청장은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2만원 이하로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p> <p>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제3조)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의견청취(제4조, 제5조) ○ 학교환경교육 등 지원(제6조) ○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및 공무원 환경교육(제7조, 제8조) ○ 환경교육주간(제9조) ○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제10조) ○ 환경교육 단체 지원, 포상 등(제11조~제13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43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 청취)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 등 지원) ①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
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공무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거나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실적을 소속 공무원 및 해당 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주간) 구청장은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3.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역 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

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보급
2. 환경교육관련 정보의 수집·현황조사 및 제공
3. 구민에 대한 환경교육의 실시
4.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환경교육 행사에 관한 사항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6.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경교육 단체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교 및 기관·단체·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의 구체적인 개정이 필요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시설의 범위 및 정의(제2조) ○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조항 신설(제5조의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44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위생편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2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

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나. 안심가림판(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측면 칸막이의 하단부를
막는 시설)

다. 그 외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5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 또는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
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은 법 제7조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
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예
산범위에서 안전관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u>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p>	<p>제1조(목적) ----- ----- ----- ----- ---- <u>위생편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환경 조성</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공중화장실 등</u>”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p> <p>2. “<u>안전관리시설</u>”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p> <p>가. <u>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u></p>

제5조의2(범죄예방 시설 등의 설

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대변기의 출입문을 제외하고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가림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안심가림판(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측면 칸막이의 하단부를 막는 시설)

다. 그 외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5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 또는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은 법 제7조에 따라 비상벨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예산범위에서 안전관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p>	<p>1. 제안이유</p> <p>○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통합놀이터를 설치 및 관리하여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과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p> <p>2. 주요내용</p> <p>○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p> <p>○ 통합놀이터의 설치 및 적용범위(제3조, 제4조)</p> <p>○ 통합놀이터에 대한 설치 및 관리계획 수립(제5조)</p> <p>○ 통합놀이터 안전기준 및 조치(제6조~제8조)</p> <p>○ 통합놀이터 예산확보와 지원(제9조)</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45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

을 펼칠 수 있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5조(설치·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통합놀이터 이용안내 교육프로그램 개설
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4.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시설물 설치 계획
6.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7.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통합놀이터를 통해 모든어린이에게 친절한 아동친화적 도시로 나아간다.
2. 통합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만든다.
3. 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노 행위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예산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p>	<p>1. 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수구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의 목적(제1조) ○ 수여대상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제2조, 제3조) ○ 수여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제4조) ○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제5조) ○ 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예우 및 지원(제6조, 제7조) ○ 명예구민증 수여 취소에 관한 사항(제8조) ○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제9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46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구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
2.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3. 지역발전을 위한 직간접 투자 등 투자유치에 기여한 사람
4.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1. 구청장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3. 공로부문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4. 개인(단, 개인은 18세 이상의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및 공적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내·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려는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6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명예구민증은 구민의 날 기념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수여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패 및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의 국가언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7조(명예구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명예구민 초청 구정 설명회 개최
2. 구민의 날 기념식 등 구정 관련 주요행사에 초청
3. 명예구민의 경력사항에 따라 각종 교육강사로 활용
4.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
5.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
6. 구청장 명의 연하장 및 구정 홍보자료 발송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구의 각종 행사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명예구민증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명예구민증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때부터 제7조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않는다.

③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제9조(기록관리)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 및 취소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명예구민증서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구민상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별표]

명예구민증 (제6조제2항관련)

《앞 면》

제 호	명예구민증
○ ○ ○	사 진 35mm×45mm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명예구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인)	

규 격	비 고
기본규격 : 가로 8.4cm×세로 5.4 cm ※ 변형가능	○재 질 : P.V.C ○글 씨 : 검정색 ○사용언어 : 앞면 (한글) 뒷면 (영어 또는 기타외국어) - 선택표기 ※ 변형가능

[별지 제1호서식]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제3조제2항 관련)

사 진 (3.5cm×4.5cm)	성 명		
	생 년 월 일		(남·여)
	국 적(출생지)		
	직업 또는 직위		
주 소 및 연 락 처	자 택	주 소	
		전 화	
	사무실	주 소	
		전 화	
주 요 경 력			
공 적 사 항	(별지작성 가능)		

붙임 : 공적증명자료

[추천자]

주 소 :

연 락 처 :

○○○단체 ○○○인

또는 대표자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p>	<p>1. 제안이유</p> <p>○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 조례의 목적 및 정의(제1조, 제2조)</p> <p>○ 해병전우회 지원 대상 사업(제3조)</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47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병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 및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5.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선도 사업
6.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교육·홍보 등 관련사업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 및 정비</p> <p>2. 주요내용 ○ 여비 부당 수령 시 적용 규정 정비(제3조) -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징수</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48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 중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를 “부
정 수령액의 5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호,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9. 영 별표 1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
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u>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u>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p> <p>② (생략)</p> <p>③ <u>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u></p>	<p>제3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 ----- <u>부정 수령액의 5배</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 3. (생략)</p> <p>4. <u>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u></p>	<p>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u></p>

5. ~ 8. (생략)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5. ~ 8. (현행과 같음)

9. 영 별표 1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공포)

제 명	주 요 내 용
<p>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p>	<p>1. 제안이유</p> <p>○ 연수구의회 법률고문에 대해 지급하는 자문료를 연수구청 고문변호사 자문료 수준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p>○ 법률고문에게 지급하는 자문료 지급기준 정비 (제8조)</p> <p style="padding-left: 20px;">- 종전 자문수당 5만원을 7만원으로 상향</p>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

2023. 9. 27.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549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5만원”을 “7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수당 등) ①·② (생 략)</p> <p>③ 법률고문에 대하여 자문 1건 당 <u>5만원</u>(부가가치세 미포함)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수당 등) ①·② (현행과 같 음)</p> <p>③ -----</p> <p>-- <u>7만원</u>-----</p> <p>-----.</p>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9월 2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모집인원 : 00명

2. 모집분야 : 도시계획, 토지이용, 토목, 건축·주택, 교통, 경관(디자인), 환경, 방재, 문화 등

3. 위촉기간 : 2023. 11. 5. ~ 2025. 11. 4. (2년)

4. 주요 심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5. 응모자격

- 가. 도시계획, 토지이용, 토목, 건축·주택, 교통, 경관(디자인), 환경, 방재, 문화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모집분야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 도시계획 등 모집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
 - 도시계획 등 모집분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로서 실무경력 7년 이상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도시계획분야의 연구책임자급 이상
- 해당분야에서 5급 이상의 공무원 근무경력이 7년 이상
- 기타 위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나. 위원회 심의 및 자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참고사항

- 기술사, 건축사 등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한될 수 있음
(다만, 타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 예외)
- 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으로 다중 활동 중인 자는 제한될 수 있음
(단, 인력풀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위촉 가능)
- 기타 선정기준 등에 부적합한 지원자는 위원 선정 제외

6. 제출서류

- 가. 공개모집 지원서 1부.
- 나. 이력카드 1부.
-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 라. 소속기관장 추천서(소속기관장 추천 시) 1부.
- 마.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7. 모집기간 및 접수처

- 가. 접수기간 : 2023. 9. 26. ~ 10. 13. (18일간)
- 나.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4층)
- 우)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연수구청)
- 다. 접수방법 : 방문, 우편, E-mail 및 FAX(032-749-8639) 접수
- E-mail : oneaaal@korea.kr

라. 기타사항

- 우편 접수 시 등기우편으로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함.
- 방문 및 FAX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00시까지 제출 건에 한 함.

(※ 단, 토·일요일 제외)

- 우편, E-mail 및 FAX 접수 시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 가.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여성위원의 경우, 위촉직 위원 총수 4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마.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 바. 위원회 명단이 우리 구의 방침에 따라 소속과 성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032-749-865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서 시행하는“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 업 명 : 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325-5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4. 보상업무위탁(수행)기관 : 한국부동산원
5. 공 고 사 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거소 및 협의통지장소 불명
6. 공 고 기 간 : 2023. 10. 4. ~ 2023. 10. 19. (15일간)
7. 협의기간·장소 및 협의방법
 - 가. 기간 : 본공고일로부터 15일간 (2023. 10. 4. ~ 2023. 10. 19.)
 - 나. 장소
 -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 032-569-7566)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94, 405호(청라동, 백양빌딩)

다. 협의방법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소정양식에 인감도장 날인

8.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국토교통부'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9.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필수 구비서류 및 지참물품	
통장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인감도장	
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인 경우	② 지장물 소유자인 경우
1. 인감증명서 2통 (부동산매도용* 1, 일반용 1) * 매수자 인적사항 (성명 : 국토교통부, 등록번호 : 232)	1. 인감증명서 1통 (일반용 1)
2. 주민등록초본 2통 (과거주소변경사항 포함)	2. 주민등록초본 1통
3. 편입 부동산(토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이사)확인서·각서 1부 - <u>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첨부</u>
4. 편입토지(임야)대장 1부	
※ 토지 및 건물 소유자가 지장물 소유자인 경우 '①' 에 해당하는 서류 및 '영업(거주) 및 지장물소유 사실(이사)확인서·각서' 제출	

10. 보상협의 공고내역(토지등의 보상액 내역) : '별지'참조

11.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 됩니다.

나. 기타의견 및 문의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보상사업처 북부보상사업단 인천사업소(☎032-569-7566) 또는 인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032-749-872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협의 공고 게시(공시송달) 내역

사업명: 학나래근린공원 조성사업

일련 번호	분류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의 종류	현황	용도지역/ 구조및규격	면적및수량		단위	지분	금액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당초	편입				전체	편입				성명(명칭)	성명(명칭)	권리관계	
1	토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산77	산77	임야	임야	보전녹지지역	496	496	m ²	1/1	162,522,660	미등기	김*준	토지대장상 소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58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9. 26.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청 장

-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연수형 공공 키즈카페 민간위탁 동의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024년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